

신 · 구조문대비표

[KOLAS-SR-024]

현 행	개 정 안
<p>1.1 목적</p> <p>본 문서는 <u>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u> 및 동 요령 제15조(평가 및 인정 기준)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본 <u>지침과의 상충</u>이 발생하는 경우, 동 요령이 우선 적용된다.</p> <p>1.2.3 본 문서가 평가 및 인정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일반의뢰시험, 양산품에 대한 시험 및/또는 방위사업법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개발시험평가(DT&E)이며, 운용시험평가(OT&E)는 본 <u>지침의 적용대상</u>이 아니다.</p> <p>2. 인용표준</p> <p>KS Q ISO/IEC 17025 : <u>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u></p>	<p>1.1 -----</p> <p>-- 문서는 「<u>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u>」 (KOLAS-R-002) -----</p> <p>----- <u>추가 기술요건과의</u> -----</p> <p>-----.</p> <p>1.2.3 -----</p> <p>-----</p> <p>-----</p> <p>----- <u>추가기술요건</u> -----</p> <p>-----.</p> <p>2. -----</p> <p>----- <u>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u></p>

DOD-HDBK-781A : Reliability test methods, plans, and environments for engineering, development qualification, and production

4.4 (중략)

- 대분류 : 1. 역학시험
- 중분류 : 1.013 물리적 시험
(생략)
- ★ 는 “국방(방산)분야 KOLAS 평가를 위한 지침”도 충족하는 인정범위임.

4.5 KOLAS는 국방(방산)분야 인정범위의 효과적인 적용 및 활용을 위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지침을 지속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다.

4.6 KOLAS는 본 지침에 대한 주요사항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분야 기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 위원은 관련 부처 공무원, 관련 학과 교수,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는 무기체계/개발시험평가/통계 및 유효성 확인/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4.7 ‘국방(방산)분야’는 1회의 시

MIL-HDBK-781 -----

4.4 (중략)

- -----
- -----
- (생략)
- 「KOLAS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인정범위임을 의미함.

4.5 -----

----- 추가기술
요건-----.

4.6 ----- 추가기술요건--

-----.

4.7 -----

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비정기적이고 제한적인 시험소요의 한계로 "공인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규정(KOLAS-R-004)"에서 요구하는 현장평가 시 현장입회시험의 실시가 어렵거나 평가기간 내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4.8 KOLAS는 국방(방산)분야 평가 시, 공인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KOLAS-R-004)에 규정된 KS Q ISO/IEC 17025 평가점검표 외 <부속서 A-규정(Normative Reference)> ‘국방(방산)분야 평가를 위한 KS Q ISO/IEC 17025 추가지침’ 과 <부속서 B-규정(Normative Reference)> ‘국방(방산)분야 평가점검표’ 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5.3 해당기관은 공인시험기관 인정 신청 시, 각 분야 또는 시험유형에 따라 고시된 분야

----- 「KOLAS 공인기관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KOLAS-R-004)

-----.

4.8 -----
----- 「KOLAS 공인기관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

-----.

5.3 해당기관은 KOLAS -----

별 추가기술요건(역학, 화학 및 생물학, 전기, 법과학 등 KOLAS-SR 시리즈 문서)을 검토하여 적합한 분야로 신청해야 한다.

5.4 국방(방산)분야 시험유형에 대한 분류와 KOLAS 시험기관 인정분류체계와의 비교 정보는 <부록 C-참고(Informative Reference)>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인정범위 설정 시, KOLAS는 사용자의 인정범위 활용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최대한 고려하여 평가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5.5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으로 KOLAS에 인정 신청하는 기관은 『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인정신청하며, 동 요령 <별지 제4호 서식>인 ‘공인시험기관인정신청서’ ⑦항 신청분야에 ‘대분류’, ‘중분류

-----.

5.4 -----
----- 공인시험
기관 -----

-----.

5.5 -----
-----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
령」(KOLAS-R-002)-----
-- <별지 제1호 서식>인 ‘KO
LAS 공인시험기관인정신청서’

‘와 “국방(방산)분야 시험”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

㉞ 신청분야	1. 역학시험, 1.013 물리적시험 (국방(방산)분야 시험) - 세부인정범위 별첨
--------	---

또한, ‘공인시험기관인정신청서’에 본 문서의 <별지 제1호 서식> ‘세부인정신청범위’를 첨부하여 인정신청하여야 한다.

6.1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평가 시, KOLAS는 ‘국방(방산)분야 평가사 및/또는 기술전문가’를 추가하여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국방(방산)분야 평가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프로세스 및 테일러링 개념에 대한 전문지식과 반드시 무기체계개발 사업관리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6.4 해당기관의 테일러링된 시

-----.

예)

신청분야	1. 역학시험, 1.013 물리적시험 (국방(방산)분야 시험) - 세부인정범위 별첨
------	---

-----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신청서’ -----

-----.

6.1 -----

----- 무기체계 시험 또는 시험평가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

-----.

6.4 -----

험방법의 적용 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사는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기준(KOLAS-R-005)에 정한 자격 외에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추가적인 교육훈련(일반과정 60시간, 전문과정 60시간, 시험방법의 유효화 과정, 테일러링 실무)을 이수하여야 한다.

6.5 KOLAS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2>의 ‘무기체계 분류’의 특정 시험유형별(환경시험, EMC, 기동성능시험 등)로 테일러링된 시험방법을 평가할 평가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이 테일러링을 요구하는 시험방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방법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신 설>

----- 테
일러링, 유효화 과정 등이 포
함된 전문과정 35시간 이상)
을-----.

6.5 -----

----- 평가사를 우선 배정-----
-----.

9.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4월 XX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건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KOLAS로 부터 인정받은 1.2.2항에 해당하는 공인시험기관이더라도 본 요건에 따라 인정신청 및 평가한다.

<부속서 A - 규정(Normative Reference)>

A.4.1 조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건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KOLAS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196호, 2016. 7. 4.)에 의한 공인기관 인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추가기술요건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KOLAS로 부터 인정받은 1.2.2항에 해당하는 공인시험기관이더라도 본 요건에 따라 인정신청 및 평가한다.

<부속서 A - 규정(Normative Reference)>

A.5 조직요구사항

A.4.2 경영시스템

1) 테일러링된 문서를 해석, 검증, 적용, 판단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자격조건 및 자격부여를 위한 절차.(학력, 경력, 교육, 경험) -

A.5.2항 참조

A.4.4 의뢰, 입찰, 계약의 검토

A.4.5 시험의 위탁

(1) 본 추가지침 A.5.3항 및 A.5.5항에 제시된 타 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시험하는 경우, 위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시험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다.

A.4.9 부적합 작업의 관리

A.4.13 기록의 관리

A.4.14 내부심사

A.5.2 직원

- 해당분야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테일러링은 목적, 대상, 방법의 난이도/복잡성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인원’의 자격부여는

A.8.2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1) -----

A.6.2항 ---

A.7.1 -----

A.6.6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1) ----- A.6.3항 및 A.6.4항

A.7.10 부적합 작업

A.7.11 데이터 및 정보 관리의 통제

A.8.8 -----

A.6.2 인원

-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추가 교육훈련 (일반과정 60시간, 전문과정 35시간 이상) 이수자

최소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2>"에 따른 무기체계 중분류별 또는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KOLAS-R-002)" <별표 1>에 따른 KOLAS 시험분야 중분류별로 임명되어야 한다. 역량이 보장된다면 동일인이 여러 분류에 임명될 수 있다.

(2)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에 언급된 기술인력(기술책임자, 품질책임자, 시험실무자)외에 특정 작업을 실시하는 직원(예 : 상기 A.5.2의 (1)항에 제시된 인원, 의견 및 해석 수행자 등)을 임명하여 활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3) 일부 분야(예 : 환경성 시험)는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별표 3>에 따른 시험실무자의 업무능력 평가 시, 정확도, 불확도 또는 숙련도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체계적인 시험기록의 검토, 시험 전과정의 입회 점검 등이 실무자의 업무능력 평가로 대체될 수 있다.

-----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R-002)-----

(2)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
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A.6.2-----

(3)-----
--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4) 교육훈련

1) 해당기관 경영진은 교육에 대한 방침 및 목표 수립 시, 상기 A.5.2의 (1)항에 제시된 인원에 대한 역량 유지 및 개발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과정이나 해당 분야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관련 (국내·외)세미나, 워크샵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역량 유지 및 개발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 (생략)

A.5.3 시설 및 환경, 5.5 장비

(1) (생략)

1) (생략)

2) 타 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인정 신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소한 다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 평가사가 ISO/IEC 17025 5.3항 및 5.5항 평가 시, 관련 시설 및 정보의 접근에 영향이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해당기관의 서면 동의 및 정보제공 허가 등) 단, KOLAS

(4) -----

1) -----

A.6.2-----

2) (현행과 같음)

A.6.3 ----- 환경 조건, 6.4 ---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6.3항

및 6.4항 -----

는 국방부 및/또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시설 및 정보의 접근에 영향이 없는 직원을 평가사로 배정할 수 있다.

A.5.4 시험방법과 방법의 유효성 확인

A.5.4.1 일반사항

A.5.4.2 방법의 선정

A.5.4.3 해당기관이 개발한 방법

해당기관이 자체 사용을 위하여 개발한 시험방법이나, 테일러링을 요구하지 않는 시험방법에 대한 시험조건의 수정이나 추가, 삭제는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적절한 능력을 갖춘 자격 있는 직원에 의해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계획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갱신되고, 추적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관련된 직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보장되어야 한다.

A.5.4.4 표준이 아닌 방법

상기 A.5.4.2항에 따른 표준화된 시험방법에서 테일러링을 요구하는 경우, 규정된 인정범위에서만 테일러링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

-----.

A.7.2 방법의 선정, 검증 및 -----

A.7.2.1 -----

A.7.2.1.1 -----

A.7.2.2.1 -----

-----.

표준화된 -----

험방법의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테일러링을 수행하는 경우 표준이 아닌 시험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벗어난 부분에 대한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

A.5.4.5 방법의 유효성 확인

A.5.4.6 측정불확도 추정

A.5.4.7 테일러링된 시험방법의 적용

A.5.6 측정소급성

- (1) (생략)
- (2) IT보안성평가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교정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국방(방산)분야의 시험항목에 따른 소급성 규정은 해당 항목에 부합한 분야별 추가기술요건 (KOLAS SG 시리즈)를 참조한다.

A.5.8 시험품목의 관리

A.5.9 시험결과의 품질보증

A.5.10 결과보고

<부속서 B - 규정(Normative Reference)>

A.4.1 조직

A.4.2 경영시스템

- 1) 테일러링된 문서를 해석, 검증, 적용, 판단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자격조건 및 자격부여를 위한 절

-----.

A.7.2.2 방법의 유효성 확인

A.7.6 측정불확도 평가

A.7.2.2.2 -----

A.6.5 -----

- (1) (현행과 같음)
- (2) -----

----- SR -----.

A.7.4 시험 또는 교정 품목의 취급

A.7.7 결과의 유효성 보장

A.7.8 결과보고

<부속서 B - 규정(Normative Reference)>

A.5 조직요구사항

A.8.2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1) -----

차.(학력, 경력, 교육, 경험) -	-----
<u>A.5.2항</u> 참조	<u>A.6.2항</u> ---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5) 해당되는 경우, 테일러링 기법 과 사례(참조: <u>DOD-HDBK-248</u>)	5)----- ----- <u>MIL</u> -----
<u>A.4.4</u> 의뢰, 입찰, 계약의 검토	<u>A.7.1</u> -----
<u>A.4.5</u> 시험의 위탁	<u>A.6.6</u>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u>서비스</u>
<u>A.4.9</u> 부적합 작업의 관리	<u>A.7.10</u> 부적합 작업
<u>A.4.13</u> 기록의 관리	<u>A.7.11</u> 데이터 및 정보 관리의 통제
<u>A.4.14</u> 내부심사	<u>A.8.8</u> -----
<u>A.5.2</u> 직원	<u>A.6.2</u> 인원
b) <u>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u> 에 언급된 기술인력(기술책임자, 품질 책임자, 시험실무자)외에 특정 작업을 실시하는 직원을 임명하여 활용할 경우, 다음사항을 보장하 고 있는가?	- 「 <u>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u> 」----- ----- ----- ----- -----? -----?
e) 데이터 무결성 교육	(e) -----
- 주제 및 교육자료, 향후 교육계 획에는 <u>A.5.2의</u> 제(5)항에 대한 사 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 <u>A.6.2</u> ----- -----?
<u>A.5.3</u> 시설 및 <u>환경</u>	<u>A.6.3</u> ----- <u>환경 조건</u>
<u>5.5</u> 장비	<u>6.4</u> ---
<u>A.5.4</u> 시험방법과 방법의 유효성 확인	<u>A.7.2</u> 방법의 선정, 검증 및 -----
<u>A.5.4.1</u> 일반사항	<u>A.7.2.1</u> -----

A.5.4.2 방법의 선정

A.5.4.3 해당기관이 개발한 방법

해당기관이 자체 사용을 위하여 개발한 시험방법이나, 테일러링을 요구하지 않는 시험방법에 대한 시험조건의 수정이나 추가, 삭제는 유효성을 입증하였는가?

또한, 적절한 능력을 갖춘 자격 있는 직원에 의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계획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갱신되고, 추적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A.5.4.4 표준이 아닌 방법

상기 A.5.4.2항에 따른 표준화된 시험방법에서 테일러링을 요구하는 경우, 규정된 인정범위에서만 테일러링을 적용하고 있는가?

A.5.4.5 방법의 유효성 확인

a) 해당기관이 개발하여 유효성 확인을 거쳐 KOLAS로부터 인정받은 방법은 명확한 범위(측정원리, 측정절차, 시험아이템(무기체계), 시험유형, 세부시험유형(측정항목), 해당되는 경우, 테일러링 지침 등)가 설정되어 있는가?

(적용되는 경우, 본문 8항 ‘Flexible scope’로의 인정 - 선

A.7.2.1.1 -----

A.7.2.2.1 -----

-----?

--?

표준화된 -----

-----?

A.7.2.2 방법의 유효성 확인

a) -----

-----?
<후단 삭제>

택사항' 충족 필요.)

A.5.4.6 측정불확도 추정

A.5.4.7 테일러링된 시험방법의 적용

A.5.6 측정소급성

A.5.8 시험품목의 관리

A.5.9 시험결과의 품질보증

A.5.10 결과보고

<부속서 C - 참고(Informative Reference)>

시험유형	시험세부유형	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안내사항
G. 생물학 적시험	G.1 약물 및 생물검정시험	대분류 : 7.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7.001 약물시험
	G.2 미생물 시험	대분류 : 7.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7.002 미생물시험
	G3 살충효과 및 저항력시험	대분류 : 7.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7.003 살충효과 및 저항력 시험
	G.4 생물학 시험	대분류 : 7.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7.004 육상동물학, 7.005 육상 식물학, 7.006 수중생물학
	G.5 환경독성시험	대분류 : 7.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시험항목 또는 특성에 따라 적합한 중분류 설정
	G.6 세포배양및GMO	대분류 : 7.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7.008 세포배양 및 GMO

<부속서 D- 참고(Informative Reference)>

D.7.1 과도한 적용

(4) 규격서들 내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상호참조 (cross-referencing)에 적절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음. 계약자는 요구사항으로 적절히 유효화 되지 않은 규격서와 표준을 적용하도록 요구받을 수

A.7.6 측정불확도 평가

A.7.2.2.2 -----

A.6.5 -----

A.7.4 시험 또는 교정 품목의 취급

A.7.7 결과의 유효성 보장

A.7.8 결과보고

<부속서 C - 참고(Informative Reference)>

시험유형	시험세부유형	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안내사항
G. 생물학 적시험	G.1 약물 및 생물검정시험	대분류 : 9.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9.001 약물시험
	G.2 미생물 시험	대분류 : 9.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9.002 미생물시험
	G3 살충효과 및 저항력시험	대분류 : 9.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9.003 살충효과 및 저항력 시험
	G.4 생물학 시험	대분류 : 9.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9.004육상동물학, 9.005육상 식물학, 9.006 수중생물학
	G.5 환경독성시험	대분류 : 9.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시험항목 또는 특성에 따라 적합한 중분류 설정
	G.6 세포배양및GMO	대분류 : 9. 생물학적시험 중분류 : 9.008 세포배양 및 GMO

<부속서 D- 참고(Informative Reference)>

D.7.1 -----

(4) -----

있다. 의도되지 않은 요건들이 낮은 단계의 문서들 안에 언급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D.8.1.5 예외 시트

때로는, 규격서에 대한 개정판이나 수정판의 발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기존 프로그램 진행결과를 참조하기 위해 적시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참조 규격서들과 표준들을 테일러링하기 위한 편리한 기법은 규격서 예외시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외시트는 RFP나 시험평가계획 문서들 안에 언급될 규격서나 표준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예전 프로그램들에 승인된 예외들에서 맞닥뜨린 비용-효율적인 규격서 변경을 채택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D.8.1.7 발췌 요구사항

낮은 단계의 적용에서, 체계 규격서나 다른 계약 요구사항이 기술된 문서들 안에 언급된 규격서와 표준은 단지 언급된 문서의 몇몇

본

추가기술 요건에 따른

D.8.1.5

예외서식

예외서식은

D.8.1.7

본 추가기술요건의

단락들만이 종종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적용되는 단락들은 언급된 규격서들로부터 발췌되어야 하며, 낮은단계 문서에 대한 언급 없이 체계사양이나 다른 문서안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발췌된 단락에 대해 필요한 테일러링이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규격서의 복잡성 및 관련된 제안서의 양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의 전 수명에 걸쳐 데이터추적 노력을 감소시킨다.

D.8.1.9 업데이트요건

체계 개발단계 동안, 계약서는 각 개별적인 업데이트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계약자가 계약적으로 승인된 낮은단계 규격서들과 표준들의 최신 버전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부품과 재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D.8.1.10 가이드로서의 규격서 및 표준

낮은 단계 문서들의 주요한 기준이 발췌되어 체계 규격서에 기재

-----.

----- 본 추가기술요건에 따른 -----

D.8.1.9 -----

----- 승인된 -----

D.8.1.10 -----

----- 본 추가기술요건에 따른 -----

되어야 한다.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낮은 단계들 내에 언급된 문서들은 처음에는 “기술적 가이드” 문서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이후에 생산이나 시험평가단계가 구체화되고 갱신될 때, 장비나 시험 조건 등 중요한 요구사항들은 의무적인 요구사항들로 적용될 수 있다.

D.8.1.12 성능 규격서의 이용

조립 규격서 대신에 성능 규격서를 이용하는 경우, 무기체계 설계 내에 포함된 많은 낮은 단계 구성품과 장치에 비용-효율적일 수 있다. 엔지니어링 개발 단계 동안 선택 부품 및 재료목록과 함께 성능 규격서를 이용하면,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본 추가기술요건에 따른 문서들 -

-----.

D.8.1.12 -----

----- 많은 -----

-----.